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18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제2201518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안 제5조)	3
나.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등(안 제17조의3)	10
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 확대(안 제34조의2)	14

I.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제220151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정식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7. 9.

다. 회 부 일 : 2024. 7.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가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라 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이 수립·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비롯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책임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임.

이에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7조의3 등).

3. 검토의견

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의 동향과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사업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 지역별·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3.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 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해외공사 실적이 높거나 새로운

현행법 시행령 제4조2)에서는 현행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해외건설과 관련한 계획 수립의 책임성 및 계획 속에 포함된 내용의 법적 구속력 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진흥

2)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 지역별·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3.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 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해외공사 실적에 높거나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으로 개척이 필요한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5.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2.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현황
 3.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해외건설사업자의 분야별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획의 경우에는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³⁾.

< 연도별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 수립 여부 >

구분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
2021년도	○	×	×
2022년도	×	×	×
2023년도	×	×	×

※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과는 달리 해외건설시장 주요 사업별 추진 및 투자계획과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및 지원대책 등,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진흥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게 되면, 현행 법령에 대한 국가의 구속력이 약화되거나 주요 내용이 사장될 소지가 있어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건설과 관련된

3) 국토교통부는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진흥계획의 경우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수립되지 않고 있으나,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안건상정 등을 통해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추진전략 마련 등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진흥계획 관련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항 규정하는 것은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관한 국가의 책임성 및 계획된 내용의 법적 효력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체계상 시행령에 규정된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환율, 유가의 급격한 변동 등 불확실한 해외건설 여건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고,

타 법률⁴⁾에 따른 국토교통분야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와

4) 「국토계획법」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 2의2.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에 관한 사항
9.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수(附隨)되는 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의무를 제한하거나 부과하는 내용을 수반하고 있어 국회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위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부과한다고 보기보다는 해외건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종합해 볼 때,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에 위임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 내용의 본질성, 중요성 및 공공성 등과 함께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⁵⁾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과 연도별 해외건설추진

5)○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 중 중요사항유보설(본질유보설)을 따르는 입장이며,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로 이해되고 있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함(헌재 2018.4.26., 2015헌가13).

○ **대법원**은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공개적인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음.(대판, 2015.8.20.,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상항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 제5조제2항6)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적 체계성 제고 측면에서 분야별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에 상항하여 함께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해외건설 촉진법」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도시개발, 교통 관련 사회기반시설, 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등 해외건설 각 분야별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나.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등(안 제17조의3)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① --- ----- -----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u>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둔다.</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u>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신설></u>	③ <u>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
	1. <u>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u>
	2. <u>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u><신설></u>	④ <u>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② <u>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u> ----- -----.

개정안은 ①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심의기구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현행 임의적 사항에서 의무적 사항으로 변경하고, ② 시행령에 규정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는 한편, ③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현행 국토교통부차관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차관 등으로 조정하는 등 위원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법 시행령 제20조의37)에서는 현행법 제17조의38)에 따라 해외건설

7)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외건설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외건설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⑨ 법 제17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해외건설 촉진법」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
2.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및 사업계획
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위원은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각 1명 및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가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동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

시행령에 규정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책임성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⁹⁾에서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

②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¹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해외건설 사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상 및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과 아울러 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 및 형식적 운영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0) 2015년 이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개최실적은 없음.

다.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대상 확대(안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 및 제28조의13에 따른 파견 직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의3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지원공사----- ----- -----.

개정안은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에 제17조의3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1)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을 별칙 적용에서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성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동 위원회에서의 의결·심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하게 제한(분쟁 조정, 인·허가 등)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 시행령 제20조의4¹²⁾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정하여, 위원과 이해 상충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¹³⁾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12)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3)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민간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